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7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의자 : 이양수 · 황주홍 · 안상수  
홍문표 · 김종회 · 위성곤  
김태흠 · 권석창 · 이완영  
홍문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해양관련 조사를 통합하여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바다거북 등의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 혼획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 또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조사(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연안습지 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등)를 '15년부터 통합 실시 중이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 및 안 제18조).

다.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혼획방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책무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해양생물자원관’을 추가하고 허용용도는 관람용·전시용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변경하며 해양동물 혼획 신고기간을 48시간 이내로 단축함(안 제20조).

마. 매매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으로 정함(안 제28조).

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고, 협력금 반환사업 시행자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대행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49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을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동물에 대한 학대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17조제4항 중 “지정절차 및 그”를 “지정 기준·절차 및 그”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조·치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기타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서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8조제5항 중 “지정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을 “지정 기준·절차 및 구조·치료비용”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로, “관람용·전시용”을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조난 또는 부상당한”을 “부상 등으로 좌초(坐礁)되거나 어구 등에 의해 혼획(混獲)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로 서”를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로, “3월”을 “48시간”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본문 중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를 “생태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가”를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대행자”라 한다)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칙

을 적용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u>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u>	제10조( <u>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u> ① ----- -----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 및 해역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 5년마다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	③ 제1항의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 -----



1. ~ 4. (생 략)

<신 설>

④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동물에 대한 학대나 불필

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서  
식지외보전기관 지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의도  
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④ ----- 지정 기  
준·절차 및 그 -----  
-----.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구조·치료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  
--.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

<p><u>&lt;신 설&gt;</u></p> <p>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u>지정 절차 및 구조·치료비용</u>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p>	<p><u>한 경우</u></p> <p><u>6. 기타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서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u></p> <p>⑤ ----- ----- -- <u>지정 기준·절차 및 구조·치료비용</u>-- -----.</p> <p><u>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u></p> <p>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① ----- ----- ----- ----- ----- ----- ----- -----</p>
--	---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 6.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  
-----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u>	2. <u>부상 등으로 좌초(坐礁)되거나 어구 등에 의해 혼획(混獲)된-----</u> ----- -----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u>경우로서</u> 해양수산부장관에게 <u>3월</u> 이내에 신고한 경우	3. ----- ----- <u>경우(제2호)</u> <u>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u> ----- <u>48시간-----</u> -----
4. ~ 6. (생 략) ④ ~ ⑥ (생 략) <u>&lt;신 설&gt;</u>	4.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u>제22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한다.</u>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 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 계획) ----- ----- -----

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  
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기  
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1. ~ 4. (생략)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 ② (생 략)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억 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되 「공유수면

마다 수립 5년.

### 1. ~ 4. (현행과 같음)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①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바다·바닷가 중 「항만  
법」에 의한 항만구역의 경우에  
는 녹지지역의 지역계수를,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지역계수를 준용한  
다.

⑤ · ⑥ (생 략)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  
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  
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  
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⑧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  
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대  
행자”라 한다)가 -----.

⑧ (현행과 같음)